

WELFARE-TO-WORK(근로 연계 복지) 프로그램 통지서

본 통지서를 읽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카운티에 알려 주십시오.

WELFARE-TO-WORK의 의미

- Welfare-to-Work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육, 훈련 및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Welfare-to-Work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구직 활동을 돕습니다.
 - 교육 또는 직업/실무 훈련을 제공하며, 기본적인 읽기, 산수 및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.
 - 직장 경력을 쌓도록 도와줍니다.
 - 필요한 경우 참가자 또는 가족을 위해 상담을 제공합니다.
- (48개월 시간 한도 내에) Welfare-to-Work 24개월 타임 클락 (Time Clock)이 있습니다.
- Welfare-to-Work 24개월 타임 클락 기간 동안 참여 가능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Welfare-to-Work 24개월 타임 클락 기간이 만료되면, 계속 같은 액수의 현금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.
- Welfare-to-Work는 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여기에는 아동 돌봄, 교통비, 그리고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특수 도구나 의복 등과 같은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. 필요에 따라 선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보조금을 사용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Welfare-to-Work는 받을 수 있는 아동 돌봄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장소를 알려줍니다.

WELFARE-TO-WORK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

- CalWORKs(California Work Opportunity and Responsibility to Kids: 캘리포니아 주 근로 기회 & 자녀에 대한 책임 - 근로 연계 양육비 지원) 프로그램에 따라 현금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Welfare-to-Work 참여에 대한 제외(면제)를 받지 않은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
- 면제 대상인 경우 Welfare-to-Work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. 면제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16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.
 - 16세, 17세 또는 18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전시간제(풀타임) 성인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. 단, Welfare-to-Work 플랜에 따라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 - 법정 피부양자 또는 피보호자, 또는 위탁 양육에 배정 받은 위험이 있는 아동을 돌보고 있는 비부모 친척 보호자.
 -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최소 달력일 기준 30일 동안 규칙적으로 근로하거나 Welfare-to-Work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.
 - 출생부터 23개월까지에 해당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. **이 예외 조건은 한 번만 적용 가능합니다.**
 - 6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친척 보호자(카운티에 따라 12개월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). **이 예외 조건은 한 번만 적용 가능합니다.**

WELFARE-TO-WORK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(계속)

- 12주 이하 아동의 부모 또는 친척 보호자(카운티에 따라 6개월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).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물어 보십시오.
- 현재 임신한 상태이고, 의사가 일을 할 수 없거나 Welfare-to-Work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진단하거나, 또는 참여를 한다 해도 바로 취직을 할 수 없거나 훈련 활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카운티가 결정하는 경우.
-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. (해당 구성원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) 일을 하거나 Welfare-to-Work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.
- Cal-Learn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임신한 상태 또는 십대 부모인 경우, 또는 Cal-Lear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상기 면제 조건 중 일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적격성 담당자 또는 Cal-Learn 케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.
- 양쪽 부모가 모두 보조금을 받고 있고, 한쪽 부모가 의무 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, 다른쪽 부모는 참여에서 면제됩니다.
- 본인이 참여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, 담당자에게 필요한 양식(CW 2186A)을 받아 Welfare-to-Work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. Welfare-to-Work 면제 가능 대상인지, 아니면 참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카운티에서 알려줍니다. Welfare-to-Work에 참여할 필요가 없더라도, 참여를 신청하면 참여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.
- Welfare-to-Work 참여 면제자가 아닌 경우, 의무적으로 Welfare-to-Work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.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, 첫 면담 약속이 언제인지 알리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.

WELFARE-TO-WORK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

- Welfare-to-Work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:
 - 본인에게 정해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
 - 합당한 이유가 없고, 문제 해결을 위해 Welfare-to-Work가 정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, 현금 보조금이 감액됩니다.
- Welfare-to-Work 의무 참여자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Welfare-to-Work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경우:
 - 본인에게 요청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
 - Welfare-to-Work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의사를 밝힌 후 합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고,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elfare-to-Work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, 현금 보조금 액수가 감액되지는 않지만, 바로 Welfare-to-Work에 다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취직을 해서 더 이상 보조금 수령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가 계속 필요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 비용을 다른 곳에서는 얻을 방법이 없는 경우, 취직한 이후 최대 첫 12개월까지는 카운티에서 계속 필요한 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보조금 수령을 중단한 후에도 최대 2년까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 12개월간은 전환기 Medi-Cal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귀하에게는 언제든지 아동 돌봄, 이동 수단, 또는 Welfare-to-Work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전화 또는 서면 형식을 통하거나 직접 만나서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.

귀하에게는 Welfare-to-Work 참여와 관련해 카운티가 내린 결정을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주 정부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